

#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
----------	----

제출년월일 : 1999. 11. 20.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이유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등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근거법령인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 조례 제8조를 삭제하고, 회계관직을 현 직제에 맞추어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음.

## 2. 주요골자

- 가.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회계관직을 “사회복지과장” 및 “노사협력담당”으로 직제에 맞추어 수정(안 제4조1항)
- 나. 의료보호관련 법령상의 용어와 맞지 않는 부분 일부수정(안 제7조1항)
- 다.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중복규정 된 대불금 상환 조항 삭제(안 제8조)
- 라. 상환독촉에 필요한 독촉장 발부양식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 3. 관계법령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임명)의 제1항 본문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을 “노사협력담당”으로 한다.

제7조(지출)의 제1항 본문중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을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으로 하고, “의료보험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으로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독촉 등)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독촉장 발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회계공무원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u>사회과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u>의료보장계장</u>으로 한다.</p>	<p>제4조(회계공무원 임명) ①----- ----- <u>사회복지과장</u>-----<u>노사협력담당</u> -----</p>
<p>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u>의료시설의장</u>이 <u>의료보호</u>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후 <u>의료보험대상자 카드</u>에 각각 기재 하고 <u>대불금 상환의무자</u>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p>	<p>제7조(지출) ①----- -----<u>의료보호진료기관</u>으로부터 <u>보호비용</u>의 청구가 있는----- ----- -----<u>대불금 상환의무</u>자에게는----- ----- -----</p>
<p>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간으로 하여 3월마다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li> <li>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li> <li>3. 대불금액의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12회</li> </ol>	<p>제8조(삭제)</p>

현행	개정안
<p>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신설)</p>	<p>제8조의2(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독촉등)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독촉장 발부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p>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독 촉 장**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뒷면)

**알 린**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 호기금	소관
상환금	대 불 액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원 원 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 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시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인)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 호기금	소관
상환금	대 불 액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원 원 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 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시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인)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 호기금	소관
상환금	대 불 액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원 원 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 금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장 (인)	
사하구청장 귀하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 호기금	소관
상환금	대 불 액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원 원 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 금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장 (인)	
사하구분임수입원(인)	

1.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정지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2.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의신청 및 문의  
○ 사하구청 사회복지과  
(전화 : 207-6041, 220-4321)